

2022

07

통권 467호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LETTER • ISSN 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지난 6월 24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본소의 2022년도 제1차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가 직원재교육을 겸해 개최되었다. (관련내용 12면, 관련기사 33면)



본소 교육부는 6월 21일 본소 강당에서 서울시 및 서울일자리지원센터와 함께 신용회복을 위한 노숙인 시설 이용자 및 실무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3년 만에 대면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26개 노숙인 시설의 시설이용자 및 실무종사자 및 서울시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하였다. (관련 기사 33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버릴 것은 부패 의식, 지킬 것은 청렴 의식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나무와 새〉

4 • 이달의 메시지

6 • 특집 ❶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1년도 상담통계 ④ 서울가정법원

12 • 특집 ❷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년도 제1차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30 • 어떻게 할까요

32 • 좋은 책

미디어와 성

33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37 • 소송구조

※ 기사 넘쳐 기획연재와 가정폭력상담실은 쉽니다.



‘가족’의 현실과 미래를 생각합니다

나날이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해야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지난 2016년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상담소는 ‘가족의 현실과 미래 - 다시 “가족”을 이야기 한다’는 제목으로 가족의 변화에 주목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정과 가족을 가장 가까이 또 가장 깊게 보며 걱정과 아픔을 나누고 해결과 대안을 모색하는 상담소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이는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상담소는 창립 당시부터 언제나 상담소의 설립 목적인 ‘가족’에 대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미래는 어떠한 것인지 또 가족의 복리 수준 현황과 지향점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검토와 논의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상담소의 다양한 연구 사업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 가정의 사실혼, 별거제도,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갈등 관계 및 법적 과제 그리고 자녀 복리와 친권법, 상속, 성년후견, 위탁가정은 물론 한부모가정, 재혼가정, 이 밖에도 지난 메시지에서 다루었던 비혼가정의 문제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담소는 상담 현장에서 나타나는 가정의 문제를 법적, 제도적 개선과 가족정책의 모색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소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주목하고 있는 가정의 변화는 일인

가구의 급증, 혼인 의식의 변화, 고령 사회로의 급속한 전이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사회 전반의 급속한 변화는 가정으로 그대로 이어져 농업 기반의 가부장제와 대가족 시대 그리고 산업사회 기반의 핵가족과 일인가구 중심이 되는 세상을 사는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고 있는 곳이 현재 우리 가정입니다. 현재의 50대부터 70대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로부터 부양받기를 포기하는 첫 세대’라고 합니다. 70대 자녀가 90대 부모를 돌보는 즉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회가 되고 있으며 경제, 사회적 여건은 자녀의 독립을 늦추어 일인가구가 급증하는 동시에 만혼과 비혼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50세 이하 자녀의 비율이 늘고 있다는 일견 모순적 사회현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가족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세부적으로 조율해 가족 구성원 전체의 복리를 도모하는 것이 이 시대의 시급한 과제가 아닐지요. 더불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과 정책적 접근에 대해 총괄적인 검토가 절실한 시점이며 비혼가정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동거가정 등에 대한 지원, 정책 등과 균형을 갖추려는 노력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누구 하나 어떠한 이유로든 사회적으로 소외됨 없이 자연으로 돌아갈 때까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호받고 복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가족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에서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지속될 제4차의 내용은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

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이상적인 내용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서류로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부처에서는 현행 민법상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데 이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세부 법안이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가족 범위에 한정해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에 대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정권고를 하고 있으니 절차상 무엇이 선결과제인지 부처사이의 협조와 조정이 절실한데 이러한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미비함이 곳곳에 보여 아쉽습니다. 아울러 상담소와 같이 가족문제의 현실과 치열하게 직면하고 있는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면서 이러한 기관들과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할 때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마련과 시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의 현실은 아이 돌봄은 물론 우리 모두 맞이하게 될 노후에 있어서도 마을 전체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의 공적 돌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 관련 모든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족 문제에 관해 최일선에 선 상담소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가정, 가족구성원 관련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팬데믹의 여파로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파도가 밀려오는 시점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위안과 희망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집 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1년도 상담통계 ④ 서울가정법원

2011년 개설해 해마다 꾸준한 진행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 제공하고 있어

2011년 출장 상담 시작 후

11여 년 간 총 80,260건 상담 진행

2021년에는 6,828건 상담

50~60대 민원인 많고 80대 이상도 있어

이혼, 유언·상속, 성년후견 순으로 상담 많아

소장 작성 등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 제공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011년 3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내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민원인들의 법률상담에 대한 수요가 많고 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출장상담실이 신설되었다.

총 2개소의 상담실에서 상담소에 속해 있는 상담위원과 변호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서 5시 까지 순번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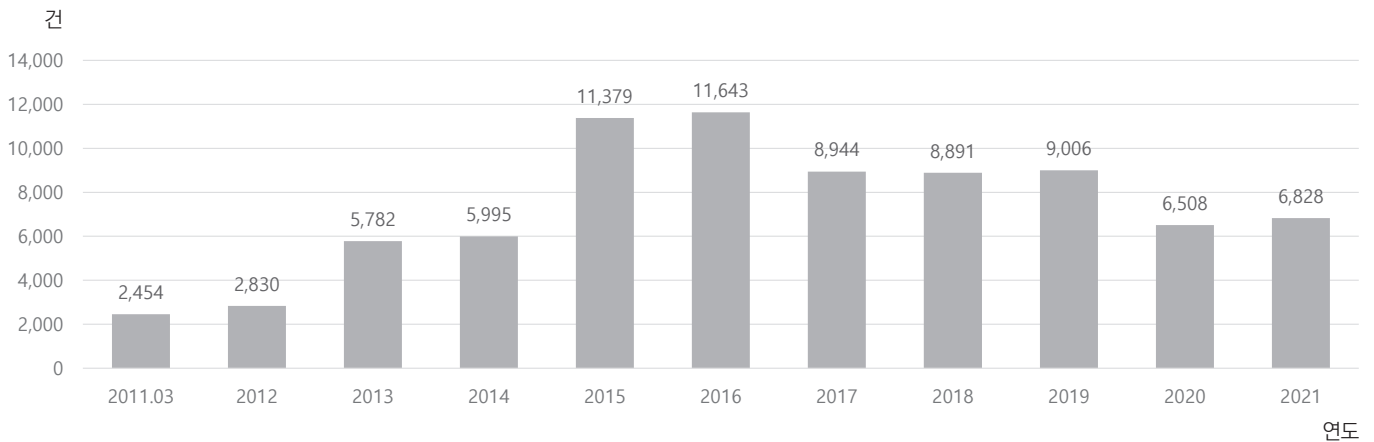
1. 연도별 상담건수

2011년 3월 28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본 상담소는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총 80,260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시작 첫해인 2011년에는 상담건수가 2,454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2,830건, 2013년에는 5,782건, 2014년에는 5,995건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민원인들의 상담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 상담실을 추가로 오픈한 2015년에는 11,379건으로 더욱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11,643건, 2017년에는 8,944건, 2018년에는 8,891건, 2019년에는 9,006건, 2020년에는 6,508건, 2021년에는 6,828건의 상담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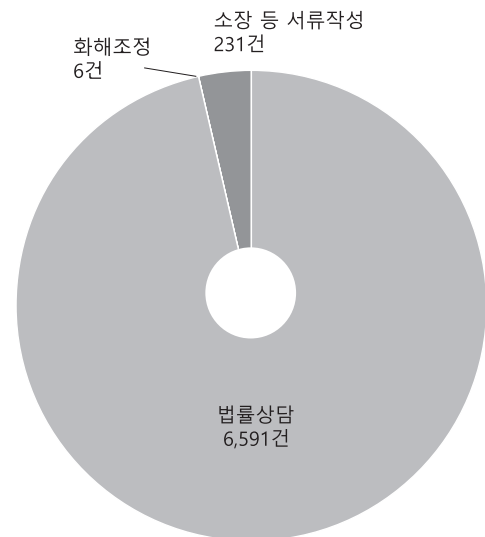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다소 주춤했던 2020년, 2021년을 제외하고 연간 1만여 건 내외의 상담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월평균 622명의 민원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 연도별 건수



〈 연도별 상담건수 분석표 〉

연도	총건수	월평균
2011/3	2,454	273
2012	2,830	236
2013	5,782	482
2014	5,995	500
2015	11,379	948
2016	11,643	970
2017	8,944	745
2018	8,891	741
2019	9,006	751
2020	6,508	542
2021	6,828	569
합계	80,260	622



하고,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작성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2. 사건처리별

소장, 답변서, 보정서, 신청서 작성 등 민원인들에게 좀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 제공해

상담실에서는 내담자들의 고민과 의문점을 듣고 그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하여 내담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법률상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사자들의 문제를 중재함으로써 화해조정을 유도하기도

한편, 상담 결과 내담자가 법을 잘 몰라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무료로 변론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소송구조 안내서류를 배부하고 본 상담소로의 방문을 유도하여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도록 처리하고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상담을 처리방법별로 살펴보면, 총 6,828건 중 법률상담은 6,591건(96.5%)이었다. 한

편,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조정과 중재를 하여 부부문제나 가족문제의 당사자들이 대화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 화해조정은 6건(0.1%)이었다. 소송을 시작하거나 진행 중인 민원인들에게 소장, 답변서, 보정서, 신청서 등 다양한 서류를 작성해서 제공한 경우도 231건(3.4%)에 달했다.

한편, 2021년 한 해 동안 여의도에 위치한 본 상담소 전체에서 진행한 상담 건수는 총 65,639건이었고, 그 중 ‘소장 등 서류작성’으로 처리된 건은 668건으로 1.0%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진행한 상담 건 중 ‘소장 등 서류작성’으로 처리된 건은 총 6,828건 중 231건으로 3.4%를 차지해 서울가정법원 상담의 경우 서류접수를 앞둔 민원인들에게 좀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처리방법별 분석표 〉

처리방법	총건수	%
법률상담	6,591	96.5
화해조정	6	0.1
소장 등 서류작성	231	3.4
합계	6,82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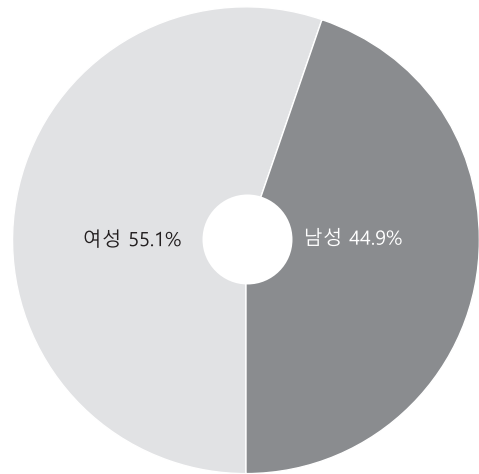
3. 내담자 특성별

1) 남녀별

여성이 남성보다 1.2배 많아

여 성	3,760 명	(55.1%)
남 성	3,068 명	(44.9%)
합 계	6,828 명	(100.0%)

내담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이 3,760명(55.1%), 남성이 3,068명(44.9%)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2배 많았다.



2) 연령별

여성은 50대, 60대, 40대 순으로

남성은 60대, 50대, 40대 순으로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은 50대가 2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60대(25.6%), 40대(19.7%), 70대(11.4%), 30대(10.4%), 20대(3.2%), 80대 이상(2.4%), 10대(0.3%)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60대가 2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50대(24.6%), 40대(15.8%), 70대(15.1%), 30대(8.1%), 80대 이상(5.0%), 20대(3.5%), 10대(0.5%) 순으로 나타나 여성과 차이를 보였다.

〈 연령별 분석표 〉

연령 \ 성별	여 성		남 성		합 계	
	수 (명)	백분율 (%)	수 (명)	백분율 (%)	수 (명)	백분율 (%)
10대	13	0.3	14	0.5	27	0.4
20대	122	3.2	106	3.5	228	3.3
30대	390	10.4	250	8.1	640	9.4
40대	742	19.7	484	15.8	1,226	18.0
50대	1,006	26.8	754	24.6	1,760	25.8
60대	964	25.6	843	27.5	1,807	26.5
70대	427	11.4	464	15.1	891	13.0
80대이상	92	2.4	152	5.0	244	3.6
미상	4	0.1	1	0.0	5	0.1
합계	3,760	100.0	3,068	100.0	6,828	100.0

4. 사건내용별

이혼, 유언·상속, 성년후견 순으로 상담 많아

상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항목은 이혼으로 총 6,828건 중 1,462건(21.4%)에 달했다. 다음은 유언·상속(1,400건, 20.5%), 성년후견(866건, 12.7%), 가사절차(494건, 7.2%), 가족관계등록부(459건, 6.7%), 가사기타(426건, 6.2%), 친생자관계존부(283건, 4.1%), 위자료·재산분할(266건, 3.9%), 양육비(190건, 2.8%), 친권·양육권(155건, 2.3%), 개명(140건, 2.1%), 성변경(139건, 2.0%), 입양(72건, 1.1%), 면접교섭권(59건, 0.9%), 친생부인(39건, 0.6%) 순이었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먼저 여성은 총 3,760건 중 이혼이 851건(22.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유언·상속(700건, 18.6%), 성년후견(468건, 12.4%), 가사절차(273건, 7.3%), 가족관계등록부(216건, 5.7%), 가사기타(205건, 5.5%), 친생자관계존부(175건, 4.7%), 위자료·재산분할(162건, 4.3%), 양육비(139건, 3.7%), 성변경(98건, 2.6%), 개명(87건, 2.3%), 친권·양육권(80건, 2.1%), 입양(39건, 1.0%), 면접교섭권(33건, 0.9%), 친생부인(27건, 0.7%) 순이었다.

남성은 총 3,068건 중 유언·상속이 700건(22.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이혼(611건, 19.9%), 성년후견(398건, 13.0%), 가족관계등록부(243건, 7.9%), 가사절차·가사기타(각 221건, 각 7.2%), 친생자관계존부(108건, 3.5%), 위자료·재산분할(104건, 3.4%), 친권·양육권(75건, 2.4%), 개명(53건, 1.7%), 양육비(51건, 1.7%), 성변경(41건, 1.3%), 입양(33건, 1.1%), 면접교섭권(26건, 0.8%), 혼인무효·취소(23건, 0.7%) 순이었다.

여성은 이혼, 유언·상속, 성년후견 순으로, 남성은 유언·상속, 이혼, 성년후견 순으로 상담이 많아 남녀별로 순위의 차이는 있었으나 이혼, 유언·상속, 성년후견 상담이 주를 이루었다.

이혼소송 진행 시 절차, 기간, 비용 등에 대한 문의 많아

이혼 관련해서는 협의가 안 되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절차 및 기간, 비용 등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정하는 방법, 위자료, 재산분할 산정 방법 등 전반에 대해 문의해왔다.

● ‘이혼’ 관련 상담 사례

1. 60대 남성

아내가 가출한 지 23년 되었다. 초등학교생인 아들을 혼자 키웠다. 이제 정리를 하고 새출발하고자 한다. 이혼하고 싶은데 아내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이혼하는 방법은?

2. 40대 남성

이혼하기로 했는데 아이문제와 재산문제가 협의가 안 된다. 아이는 현재 5살이고 딸이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3. 50대 여성

남편의 무능력과 폭언,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가족들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법원 상담실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다. 이후 진행 절차가 궁금하다.

4. 40대 여성

남편의 지속적인 음주문제로 가족들 모두가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혼인 전부터 남편이 갖고 있던 빚 때문에 늘 대부업체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아이들이 세 명인데 이혼 후 내가 키우고자 한다. 이혼하고 양육비를 받고 싶다.

망자가 남긴 빚에 대한 상속포기, 한정승인 문의 많아

상속 관련해서는 부모나 형제, 자녀 등이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절차, 범위 등에 대해 주로 문의해왔다. 한편, 망자가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남겨 본인에게 돌아오는 상속분이 없을 때 유류분을 청구하는 방법,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안 될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상속인들 간에 연락이 끊긴 경우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방법 등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고령의 부모에 대한 성년후견 문의 많아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성년후견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질병이나 고령으로 인해 법률행위에 어려움을 겪게 된 부모에 대한 성년후견 문의가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장애나 사고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불가능한 자녀, 형제에 대한 성년후견도 문의해 왔다. 이들은 청구권자, 후견인 자격, 심판절차,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왔고, 이미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후견사무 보고, 권한초과행위 허가 등에 대해서도 문의해 왔다.

● '유언·상속' 관련 상담 사례

1. 40대 여성

어머니와 이혼 후 따로 떨어져 지내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무연고 처리가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상속채무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2. 50대 여성

지난 달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머니 명의로 차량이 한 대 있어서 그 차량을 내가 상속받고자 한다. 그런데 오래 전 오빠가 집을 나가 연락을 끊어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3. 60대 남성

어머니가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나와 형이 있다. 20년 전 어머니가 부동산 모두를 나에게 준다는 유언공증을 하였다. 형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4. 60대 남성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런데 아버지 사망 몇 개월 전 형이 아버지 통장에서 큰 돈을 인출하였다. 이 경우 상속분이 어떻게 되는가?

● '성년후견' 관련 상담 사례

1. 50대 여성

어머니가 치매여서 성년후견개시 신청을 하였다. 아버지와 연락 끊긴 지 오래되어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보정 명령이 나왔다. 보정서 작성 방법 및 이후 절차는?

2. 50대 여성

동생이 어려서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다. 아주 어릴 적 진단을 받았고 이후에는 병원에 가지 않아 이렇다 할 진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성년후견개시 신청이 가능한가?

3. 60대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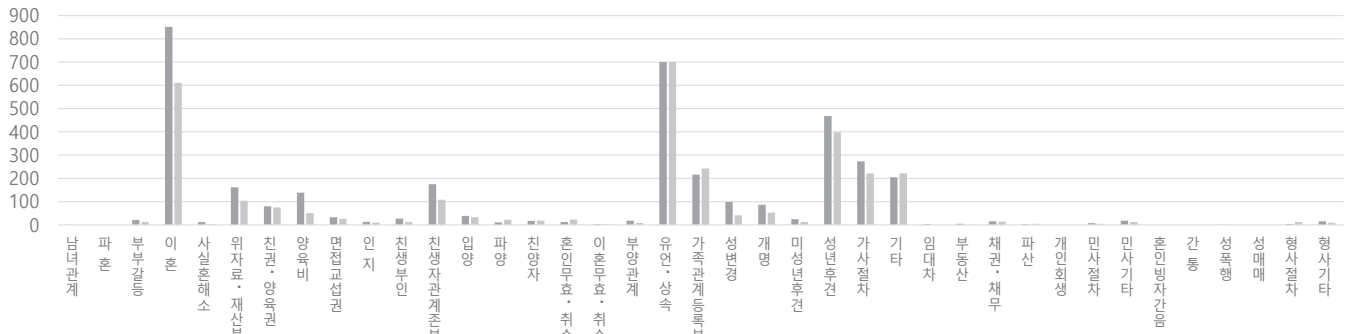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지 7개월정도 되었다. 아내 명의로 된 보험과 적금을 해지하려고 하자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오라고 한다.

4. 50대 남성

아들이 지적장애 2급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하다. 최근 카드대출이나 사채 등을 쓰며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 제공하고 있어

■ 여성 ■ 남성



〈 사건내용별 〉

사 건 내 용		성 별		여 성		남 성		합 계	
				사건수(명)	백분율(%)	사건수(명)	백분율(%)	사건수(명)	백분율(%)
가 사 6,696건 (98.1%)	남녀관계			1	0.0	-	-	1	0.0
	파 혼			-	-	-	-	-	-
	부부갈등			21	0.6	13	0.4	34	0.5
	이 혼			851	22.6	611	19.9	1,462	21.4
	사실혼해소			12	0.3	4	0.1	16	0.2
	위자료·재산분할			162	4.3	104	3.4	266	3.9
	친권·양육권			80	2.1	75	2.4	155	2.3
	양육비			139	3.7	51	1.7	190	2.8
	면접교섭권			33	0.9	26	0.8	59	0.9
	인 지			13	0.3	10	0.3	23	0.3
	친생부인			27	0.7	12	0.4	39	0.6
	친생자관계존부			175	4.7	108	3.5	283	4.1
	입양			39	1.0	33	1.1	72	1.1
	파양			11	0.3	22	0.7	33	0.5
	친양자			17	0.5	18	0.6	35	0.5
	혼인무효·취소			12	0.3	23	0.7	35	0.5
	이혼무효·취소			3	0.1	2	0.1	5	0.1
	부양관계			18	0.5	8	0.3	26	0.4
	유언·상속			700	18.6	700	22.8	1,400	20.5
	가족관계등록부			216	5.7	243	7.9	459	6.7
	성변경			98	2.6	41	1.3	139	2.0
	개명			87	2.3	53	1.7	140	2.1
	미성년후견			25	0.7	13	0.4	38	0.6
	성년후견			468	12.4	398	13.0	866	12.7
	가사절차			273	7.3	221	7.2	494	7.2
	기타			205	5.5	221	7.2	426	6.2
민 사 90건 (1.3%)	임대차			4	0.1	-	-	4	0.1
	부동산			5	0.1	1	0.0	6	0.1
	채권·채무			16	0.4	14	0.5	30	0.4
	파산			3	0.1	5	0.2	8	0.1
	개인회생			-	-	-	-	-	-
	민사절차			7	0.2	5	0.2	12	0.2
형 사 42건 (0.6%)	민사기타			18	0.5	12	0.4	30	0.4
	혼인빙자간음			-	-	-	-	-	-
	간 통			-	-	-	-	-	-
	성폭행			1	0.0	-	-	1	0.0
	성매매			-	-	-	-	-	-
	형사절차			4	0.1	12	0.4	16	0.2
	형사기타			16	0.4	9	0.3	25	0.4
합 계				3,760	100.0	3,068	100.0	6,828	100.0

김진영 상담위원

외국인 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필요성과 도입방안*

현 소 해**

I. 서론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은 아동에게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그 절차가 복잡하여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그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바, 아동의 출생등록권은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¹⁾

대법원은 위와 같은 아동의 출생등록권을 전제로 출생신

고에 필요한 모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모의 소재불명·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모가 외국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등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고 한다.) 제57조제2항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부(父)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간이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²⁾

위 결정에서는 특히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중국 국적의 모(母)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방법이 문제되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① 모가 직접 하거나(가족관

● 이 원고는 지난 6월 24일 열렸던 본소의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에서 발표된 것으로 이 원고 내용을 토대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제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담소에서 자문위원들과 더 충분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 이 글은 2020. 7. 31. 발간된 가족법연구 제34권 2호에 게재된 논문 중 일부를 발췌·수정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1) 같은 맥락에서 공적 기관에 출생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물론 출생등록에 이르는 절차가 현저히 어렵고 복잡하여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출생등록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는 문헌으로 김상원/김희진,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출생등록 제도 개선방안”, 한국아동복지학 제65권(2019), 59면 참조.

2) 이진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사례 중심의 현황과 문제점-”,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방안 토론회』 자료집(2018. 11. 21.), 7면은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와 외국인 모(母)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모(母)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한 바 있으나, 전주지방법원 2018. 4. 16.자2018호기2 결정이 이미 이러한 경우에도 위 조문에 따른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역시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와 외국인 모(母)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생신고 제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계등록법 제46조제2항), ② 부가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하거나(「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³⁾ 제8조)⁴⁾, ③ 모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2항). 그런데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모(母)가 중국 여권을 갱신 받지 못하자 일본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발행받은 여행증명서를 이용해 대한민국에 출입하였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부터 혼인관계증명서 등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법원은 법률상·사실상의 장애로 인해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즉, 부(父)가 ②의 방법에 의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③의 방법에 의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2항을 확대해석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아동인권의 관점에서는 매우 환영할만한 판결이나, 문리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점, 절차법에 의한 실체법상 친생추정 조항의 잠식 가능성이 확대되었다는 점 등에서 법리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당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2항은 모가 혼인 중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친생추정의 법리에 따라 배우자의 자녀로 출생신고해야 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위 조문을 악용하는 것을 막고자 모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⁵⁾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위 판결의 보다 근본적인 한계, 즉 출생등록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만 보장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우리 가족관계등록법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아동에 대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①의 방법, 즉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로부터 아직 인지를 받지 못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외국인 모가 출생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직

접 아동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에 의해 손쉽게 출생등록을 완료할 수 있으며, 굳이 복잡하게 부(父)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관계등록법 제1조는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강조점 필자 추가)고 규정함으로써 위 법의 적용 범위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는바,⁶⁾ 이하에서는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 제1조가 국적부로 활용되게 된 경위와 그로부터 파생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II.),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출생등록권을 보장해야 할 규범적 필요성을 논증하고자 한다(IV.).

II. 국적부로서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능과 그 문제점

1. 舊 「호적법」 시절의 관행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적용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의 태도는 舊 「호적법」(2007. 5. 17.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호적법’이라고 한다.) 시절의 관행을 답습한 것이다. 사실 호적법 제1조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조와 달리 적용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호적법 제1조는 1960. 1. 1. 제정 및 시행되었을 당시부터 폐지될 때까지 “본법은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문언을 유지하였다. 더 나아가 호적법은 곳곳에 외국인에 의한 호적 제도 이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문들을 배치해 두기도 하였다. 가령 호적법 제25조제2항은 제정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자에 관한 신고는 그

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4) 단,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모에게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 또는 2인 이상의 인우인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현재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는 ①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제57조 제2항) 뿐만 아니라 ②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제57조 제1항)에도 부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6) 대법원 2018. 11. 6.자 2018스32 결정 역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위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정정 등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으로 권영실,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의 출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절차 - 대법원 2018. 11. 6.자 2018스32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家族法研究 第34卷1號(2020), 245-250면 참조.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지지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입법자는 1998. 6. 3. 호적법을 개정하여 출생신고에서 부모, 인지신고에서 자녀, 입양 또는 파양신고에서 양부모나 양자, 혼인 또는 이혼신고에서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서에 본과 본적의 기재를 생략하고, 성명 및 국적의 기재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도 하였다(舊「호적법」(1998. 6. 3. 개정되어 2007. 5. 17. 폐지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0조, 제66조, 제72조, 제76조 및 제79조).⁷⁾ 다만, 호적법 제21조는 제정 당시부터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호적에서 제적된다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었다.

따라서 호적법 제21조와 제25조제2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가 호적법에 따라 신분사항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 호적공무원은 그에 따른 호적 기재를 하고, 그와 동시에 제적 처리를 하여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호적 선례는 ‘신고서 호적 기재 후 제적’ 절차를 밟는 대신 처음부터 외국인의 신분사항에 관해서는 호적 기재를 배제하는 입장을 택하였다. “출생자가 외국인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출생신고의무자가 있다면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지지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 다만 호적의 기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생신고 수리까지만 허용하고, 호적에의 기재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⁸⁾ 이로써 외국인에게는 ‘제적 등·초본’이라는 공적 문서를 통한 출생 증명 가능성이 원천

봉쇄되었다. 위와 같은 호적 실무상의 관행으로 인해 오랜 기간 호적에는 국민만 기재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⁹⁾ 아동이 출생한 경우에 그가 호적에 기재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했으며, 그 반사적 효과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자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과거 호적은 사실상 ‘국적부’로서의 기능도 함께 수행했던 것이다.¹⁰⁾

2. 가족관계등록법 제정 당시의 논의

2005년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¹¹⁾ 선고 후 기존의 호적 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신분등록의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는 관행은 드디어 명문의 근거를 획득하게 되었다. 2008. 1. 1.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 제도는 정부가 2006. 3. 3. 국회에 제출하였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정부안’이라고 한다.)¹²⁾, 대법원이 이경숙 의원 등 44인을 통해 의원입법 형태로 2005. 12. 28. 제출하였던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법원안’이라고 한다.)¹³⁾, 노회찬 의원 등 14인이 2005. 9. 28. 제출하였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이하 ‘노회찬 의원안’이라고 한다.)¹⁴⁾을 바탕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끝에 작성한 대안으로 채택된 것이다.¹⁵⁾

가족관계등록법의 적용 범위를 국민으로 한정한 현행 가

7) 1998. 6. 3.자 舊「호적법」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0076&efYd=19980614#0000> 참조(최종방문일자 2022. 6. 19.). 다만, 위 개정 전에도 이미 舊「호적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서 본적란에 그 국적을 기재”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었다.

8) 호적선례 제2-68호(“외국인에 대한 출생신고절차 등”) 참조. 호적선례 제3-23호(“재외공관을 경유한 재외국민 신고사건 중 사건본인의 일방이 외국인인 호적사건을 접수한 경우 접수장 기재방법”) 역시 “사건본인이라 함은 호적의 기재를 요하는 자를 말하므로 사건본인의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은 현행법상 호적의 기재를 요하는 자가 아니므로 호적예규 제24호 10항 마. 단서규정과 관계없이 한국인의 본적지 호적관서에서 ‘재외’라고 접수장 비고란에 표시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택한 바 있다.

9) 외국인에게 호적 제도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 안구환, “국제호적의 몇 가지 문제점 -중요 신분행위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국제사법연구 제12호(2006), 145-146면 참조.

10) 2003년 법무부 산하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미공간 자료, 이하 ‘회의록’이라고 한다.) 중 법무부 측 개정위원(조정환 위원)의 발언은 호적을 일종의 국적부로 인식해 왔던 당시 법무부의 시각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가령 2003. 6. 4.자 제1차 회의 회의록, 17면 중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보면 호적이라는 것이 사실상 국적부랑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제3차 회의 회의록, 132면 중 “일인일적제라는 것은 (...) 국적부라고 할까, 국적부적인 기능을 맡고 있는 것과 연관시켜서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 발언 부분 참조.

11)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 등 결정.

12) 의안번호 174003.

13) 의안번호 173725.

14) 의안번호 172834.

15)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 경위에 대해 자세히는 현소혜,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 및 향후의 개선방안”, 家族法研究 第32卷 2號(2018), 12-15면 참조.

족관계등록법 제1조는 이 중 정부안과 대법원안 각 제1조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¹⁶⁾ 노회찬 의원은 특별히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법안심의 과정에서는 외국인에게도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특별히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¹⁷⁾ 그 적용대상이 국민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안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명실상부한 국적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 중 하나로 명시하면서 이 점을 강조하였다.¹⁸⁾ “현재 우리나라는 국적부 또는 국적증명서가 별도로 없어 신분등록부가 국적부 역할을 하게 되므로 신분등록사무와 국적사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법무부에서 신분등록과 국적사무를 함께 관장할 경우 관련사무의 일원화 및 체계화가 가능하고 아울러 신분등록사무와 신원조회업무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법무부가 신분등록사무를 관장할 경우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수형사무 등과 손쉽게 연계될 수 있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예산의 절감 및 업무의 효율화에 기여”¹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정부안이 국적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분등록은 당연히 내국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굳이 이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거나²⁰⁾, 국적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기존에 대법원이 관장해왔던 신분등록사무를 법무부의 관

장으로 옮기기 위한 전략²¹⁾이라거나, 이러한 개인등록사무를 형사사건과 관련이 깊은 부서로 옮기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²²⁾는 등의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회는 정부안이 주장하였던 국적통보 제도²³⁾에 관한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국적의 문제는 신분등록제도에서 주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²⁴⁾로 정부안이 제안하였던 법률의 제목으로부터 ‘국적’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대법원이 계속 관장하도록 정하였다.²⁵⁾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법률 제정 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기존의 호적 제도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적용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되, 정부안과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의 ‘국적부’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은 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3.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의 태도

1. 및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에게만 신분등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오랜 실무 관행이었고, 이에 대해 의심이 제기된 바도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후 얼마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지고²⁶⁾,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증가²⁷⁾하면서 외국인의 신분등록 및 증명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던 것이다.

- 16) 정부안 제1조는 “이 법은 국민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취득과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법원안 제1조는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신분관계의 등록 및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신분등록사무’라 한다)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 17)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2006. 4. 21) 회의록 27-34면; 제26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6. 8. 24.) 회의록 3-7면;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7. 4. 13.) 회의록 45-53면;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7. 4. 24.) 회의록 45-48면 참조.
- 18) 정부안 ‘제안이유’ 참조. 위 ‘제안이유’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4240>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종방문일자 2022. 6. 19.).
- 19)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2006. 4. 21) 회의록 28면(박기준 전문위원 발언 부분).
- 20)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2006. 4. 21) 회의록 29면(박기준 전문위원 발언 부분).
- 21)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7. 4. 24.) 회의록 47면(주성영 의원 발언 부분).
- 22)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2006. 4. 21) 회의록 34면(이은영 의원 발언 부분).
- 23)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도록 하여 별도로 국적변동신고가 없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가족관계등록법제93조, 제94조 및 제98조).
- 24)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작성한 ‘대안의 제안이유’는 “가족관계등록부 그 자체는 ‘국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므로 법명에서 ‘국적’ 부분을 삭제”한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국회 심의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왜곡된 것이다. 위 ‘대안의 제안이유’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OD7E0T4J2V6A1L9J5H3O3G5I2T8L4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종방문일자 2022. 6. 19.).
- 25)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7. 4. 24.) 회의록 48면(이상민 위원장 발언 부분).
- 26) 코로나 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2020. 1. 31. 기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426,433명으로, 이 중 무려 1,740,947명이 대한민국에 장기체류 중이다. 2010년 기준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총수가 1,261,41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체류외국인 숫자의 증가 추세를 짐작할 수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0년 1월호, 14-15면 참조.
- 27) 2018년 기준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의 비중은 9.2%, 전체 출생 중 다문화 출생의 비중은 5.5%에 달한다. 통계청, 『2018년 다문화

대표적으로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나 한국인에 의해 입양된 외국인 자녀는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될 수 없으므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각종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해 혼인관계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²⁸⁾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은 2009. 9. 18.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²⁹⁾를 제정하여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명·출생연월일·외국인등록번호·국적 및 성별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2010. 5. 4.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의해 법률에 명문의 근거를 갖게 되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조 제2항 제4호).³⁰⁾ 다만, 이때 외국인은, 그가 국민인 자녀의 부모인 때에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국민인 상대방의 배우자인 때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국민인 부모에 의해 인지·입양·친양자입양된 때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될 수 있을 뿐이며, 일인일적제에 따른 자기 고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받는 것은 아니다. 즉, 현재 외국인은 국민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한도 내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³¹⁾

이와 같이 외국인 자신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국인이 '가족관계'의 증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제도

를 이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은 자신의 본국법에 따른 신분증명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굳이 우리나라에서 출생신고 등을 허용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용자를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³²⁾ 가령 외국인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본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이를 통해 출생증명 관련 서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언제나 본국법에 따른 신분등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³³⁾

외국인에게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결과 국적의 변동만으로 느닷없이 당사자가 신분등록 및 증명의 유일한 통로를 잃게 되는 일들도 빈번하게 관찰된다. 특히 혼인 외 출생자의 모(母)가 외국인인 경우가 문제된다. ① '혼인 외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 중 한 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녀가 즉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이용할 수 있고, ② '혼인 외 출생자'로서 모(母)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父)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도 자녀는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모(母)의 국적에 의거하여 즉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³⁴⁾ ③ 혼인 외 출생자의 부(父)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모(母)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 자녀는 부(父)로부터 인받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³⁵⁾

인구동태 통계』, 2019, 1, 3면 참조.

28) 2010. 5. 4.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75호) 일부개정 이유. 자세한 내용은 문흥안,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20권1호(2013), 322면 참조.

2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4호. 위 예규는 두 차례에 걸친 개정을 거쳐 현재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7호로 시행 중이다.

30)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현소혜(2018), 29면 참조.

31)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해정,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9, 30면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2년 9개월간 외국인의 증명서 발급건수가 약 49만 건에 달하였다고 한다.

32)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제5·6차 국가보고서(이하 UN 문서는 UN 문서 고유의 인용방식에 따라 인용한다.)에서 우리나라에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로 본국법에 따른 출생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서술한 바 있다. CRC/C/KOR/5-6, para.59 참조.

33) 같은 취지로 송진성,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아동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사회보장법연구 제7권제1호(2018), 234면도 참조.

34) 이때에는 외국 국적의 부(父)가 스스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에 따라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00호는 2014. 6. 1. 종래 이 경우에 외국인 부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던 조문을 삭제하였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로 가족관계등록실무[III], 법원행정처, 2018(이하 ‘가족관계등록실무(2)’ 형태로 인용한다.), 654면 각주 169) 참조.

35) 이 때 한국 국적의 부(父)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에 따라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그 출생신고만으로 즉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는 없고,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취득 또는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에 한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미 태아인지 신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녀가 출생하면 부(父)의 출생신고에 의해 즉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실무(2), 651면 참조.

국민 아닌 자로서 가족관계등록제도와 본국법에 따른 신분등록 제도를 모두 이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국적의 변동으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어 증명의 수단을 상실하게 된 사례들을 4. 이하에서 살펴본다.

4. 구체적 사례

가. 본국법에 따른 신분등록이 법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등록도 불가능하고, 본국법에 따른 신분등록 역시 법적으로 불가능 또는 어려운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³⁶⁾

(1) 일부 국가는 외국에서의 출생신고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가령 네팔의 경우, 부모 등 출생등록의무자가 본국 소재 신분관서에 직접 출석해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자녀가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부모가 네팔에 귀국한 후 6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³⁷⁾ 그 결과 네팔 국적의 부모들은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먼저 출생지 국가의 법에 따라 출생신고 내지 출생등록을 하고, 나중에 본국에 귀국한 후 본국법에 따른 출생신고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에게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네팔 국적의 부모로부터 출생한 자녀는 네팔 귀국시까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2) 일부 국가는 미혼모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모로코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 모가 대한민국 내에서 혼인 외 출생자를 출산한 경우에 그는 본국법에 따

른 출생신고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³⁸⁾ 만약 자녀의 생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외국인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를 하거나, 모가 소재불명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하지만 부(父)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모(母)의 본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신분등록제도의 이용이 불가능하다.³⁹⁾

나. 본국법에 따른 신분등록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본국법에 따른 신분등록도 사실상 어려운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1)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등은 본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로 인해 본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으므로, 그들에게 본국 대사관 등을 방문하여 출생신고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⁴⁰⁾ 실제로 중국인 부모가 4명의 자녀를 출산한 후 중국의 한자녀 정책으로 인해 대상 아동들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하고 인도적 체류자격을 받았으나, 정작 외국인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결과 해당 부모가 우리나라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안이 보고된 바 있다.⁴¹⁾

(2) E-9 체류자격(비숙련·저임금 노동)을 갖추고 있는 이

36)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 문헌으로 이진혜(2018), 6, 12-21면 참조.

37) 서종희, “출생신고 및 등록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국내입법방향에 대한 소고”, 연세법학 제27호(2016), 56면.

38) 이진혜(2018), 20면.

39)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모(母)가 혼인 중에 출산을 하였으나, 배우자의 친자가 아니라 모(母)가 본국 거주 중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포태한 자녀임이 확인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자 모(母)가 본국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모(母)가 혼인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본국법에 따른 출생신고가 허용되지 않았던 사안으로 강성의, “유기·학대 아동, 이주배경 아동 출생신고 관련 사례발표”,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모색 토론회』(2016. 10. 25.), 15-16면 참조.

40) 권영실(2020), 249면; 김진, “아동 권리의 시작점인 출생신고 국제법과 국제기준-”,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방안 토론회』 자료집(2018. 11. 21.), 30-31면; 이진혜(2018), 6-7면; 이탁진, “이주배경 아동 출생신고 보장 방안”,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모색 토론회』(2016. 10. 25.), 52면.

41) 이진혜(2018), 18면. 그 밖에 2019. 5. 3. 자 연합뉴스 기사도 참조(이집트인 부부가 함께 난민신청 후 심사를 기다리던 중에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출생신고가 허용되지 않고, 국적국 재외공관에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사안). 위 기사는 <https://www.yna.co.kr/view/AKR20190502188300004?section=search>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종방문일자 2022. 6. 19.).

주노동자에게는 가족동반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그들 자신은 합법적 체류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불법체류자가 된다.⁴²⁾ 이 경우에 이주노동자인 부모로서는 한국에서의 취업 기회를 포기하고 자녀와 함께 귀국하거나, 양육을 포기하고 자녀만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하지만 양자 모두 부모로서는 어려운 선택지이므로,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소득활동을 계속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때 이주노동자인 부모는 본국 대사관 등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 불법체류자인 자녀로 인해 단속이나 강제퇴거를 당하리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므로, 결국 자녀는 본국법에 따른 신분등록도, 한국에서의 가족관계등록도 되지 않은 채 성장하게 된다.⁴³⁾

(3)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역시 자신들의 불법체류 사실이 대사관 등에 알려질 경우 단속이나 강제퇴거될 것을 우려하므로 대한민국 내에서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자국 대사관 등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 이주노동자 송출국 대사관 등은 대한민국과의 외교적 관계나 차년도 자국민 이주노동자를 위한 사증 발급 기회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불법체류자의 숫자를 관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⁴⁴⁾ 경우에 따라서는 자국 대사관 측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출생신고 접수를 거부하기도 하며, 까다로운 조건이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출생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기도 한다.⁴⁵⁾

(4) 대한민국 내에 대사관 등을 두고 있지 않은 국가 출신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 그는 일본·중국 등 인근 국가에 소재한 대사관 등에 방문해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대한민국 내에 출생 직후의 영아를 위탁할만한 인적 자원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대사관 등이 있는 국가를 방문하여 본국법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이러한 시간적 노력과 금전적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⁴⁶⁾

다. 국적 변경으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경우

우리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후 국적 변경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어 신분증명의 방법이 사라지는 경우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1) 외국인 모(母) A가 한국인 남편 B와 혼인 중에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 C를 출산하였으나, 사실 B는 C의 친부가 아니었던 사안이다. 이 경우에 친생부인 판결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의해 B와 C 사이의 친생추정이 반복되면, C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즉시 폐쇄된다. 친생추정의 반복에 의해 C는 부(父)를 알 수 없는 자가 되고, C의 모(母)는 외국인이므로, C는 출생 당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더 이상 가족관계등록 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母)인 A가 C 출산 후 친생추정 반복 전에 귀화하여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같다.⁴⁷⁾ 이 때 모(母) A는 C를 위해 본국법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는 것도 봉쇄된다.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에 의한 호적 제도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모(母) A는 이미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상태여서 중국법에 따른 출생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⁴⁸⁾

(2) 최근에는 한국인 父 A가 혼인 중에 배우자가 아닌 외국인 B와의 사이에서 자녀 C를 출산한 후 한국인 D와 한국인 E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로 출생신고를 마쳤으나, 후에 A가 자신의 법률혼 배우자와 이혼하고 B와 혼인하게 되자, C와 D·E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C와 A·B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C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D·E에서 A·B로 정정하고자 한 사안이 문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는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고, 그 자녀가 미성

42) 김사강, “이주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운동의 역사와 과제”, 『이주민법연구』, 景仁文化社, 2017, 513면에 따르면 비숙련 이주노동자의 자녀라도 국내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이 시행 중이라고 하나, 관련되는 법적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43) 소라미,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家族法研究 第30卷 3號(2016), 482면.

44) 소라미(2016), 491면; 이탁진(2016), 51면.

45) 김사강(2017), 524면; 김진(2018), 31면; 이탁진(2016), 51면.

46) 같은 취지로 권영실(2020), 249면.

47)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문헌으로 이진혜(2018), 13, 15면.

48) 유사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문헌으로 강성의(2016), 14-15면.

년인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가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위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그 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⁴⁹⁾는 전제하에 일단 C의 가족관계등록부로부터 D·E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C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父 A가 인지신고를 하여 C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야 비로소 C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⁵⁰⁾

라. 소결

우리나라가 국적에 관해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는 이상 다.의 사안에서 모두 C가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혼인 외 출생자가 출생할 당시 母가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당하는 것은 분명 문제이다. 오랜 기간 대한민국에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모든 활동을 영위해 오던 C가 국적의 변동만을 이유로 공적 장부로부터 추방되고, ‘투명인간’으로 전락하여 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다. (1)의 사안에서는 본국법에 따른 신분등록마저 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더욱 부당하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 또는 나.와 같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받는 것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출생과 동시에 평생을 ‘투명인간’으로 살아야 할 수도 있다.⁵¹⁾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이용을 배제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III.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III. 외국인 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 필요성

1. 인권 보장의 관점

II.에서 살펴본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나라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도, 본국법에 따른 신분등록도 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에서 ‘투명인간’으로 체류하고 있는 아동들은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출생등록되지 못한 아동들이 처하게 되는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인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을 주장하는 여러 문헌⁵²⁾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아동에 특유한 문제만을 위주로 서술한다. 권리의 유형별로 살펴본다.

가. 출국할 권리

신분등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아동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본국으로의 귀국이 봉쇄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도록 되어 있으나, 본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신분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은 그의 존재 및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길이 없어 적법한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불가능하다.⁵³⁾ 따라서 그들은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공적 신분증명서에 의해 그들의 존재 및 국적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본국으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을 수도 없다. 이는 곧 아동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면하기 위해 귀국을 희망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⁵⁴⁾ 이는 모든 사람에게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49)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참조.

50) 대법원 2018. 11. 6.자 2018스32 결정.

51) 실제 우리나라에는 현재 이와 같은 이유로 미등록된 채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이 20,000명가량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주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브리프”,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2015, 5면 참조.

52)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이 처하게 되는 각종의 인권침해적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문헌으로 권영실(2020), 248-249면; 김상원/김희진(2019), 59, 61면; 서중희(2016), 40면 각주 1; 소라미(2016), 484면; 송진성(2018), 219면 등.

53) 「출입국관리법」 제23조, 동 시행령 제29조, 동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4호 및 별표 5의2 참조.

54)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28조제1항).

Civil and Political Rights)」(이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라고 한다.) 제12조제2항에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미성년의 자녀가 출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부모는 자녀 양육을 위해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합법적 체류자였던 외국인 부모의 법적 지위조차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부모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자녀를 대한민국에 놔둔 채 혼자 본국으로부터 돌아가는 것뿐이라면, 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하 ‘UN 아동권리협약’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9조가 보장하고 있는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 및 위 협약 제10조 제2항이 보장하고 있는 아동과 그 부모가 가족재결합을 위해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출국할 수 있는 권리 및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나.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출생등록되지 않은 아동일수록 아동학대·불법입양·영아 매매 등의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신분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 국적의 아동은 그러한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을 넘어서 피해에 노출된 후 적절한 보호 역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서도, 본국에서도 신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 국적의 아동 중 대부분은 합법적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황인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이와 같이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 이는 곧 아동학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 등이 아동에게 체류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그 사실이 출입국관리소에 통보되어 해당 아동은 강제퇴거를 당하게 된다는 것, 만약 학대행위자인 부모 등에게도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학대행위자인 부모와 학대피해자인 자녀가 동반퇴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⁵⁵⁾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아동 간의 분리 및 보호가 절실한 상황에서 오히려 학대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의 감호 하에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UN 아동권리협약 제19조가 보장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설령 학대피해아동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더라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외국인 학대피해아동은 장기보호시설에 입소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⁵⁶⁾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아동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이들을 시설에 입소시키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이다.⁵⁷⁾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 3. 29. 아동복지시설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복지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대피해 이주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킬 경우 이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해당 시설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으나⁵⁸⁾, 보건복지부는 이주아동 역시 보호아동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주아동을 위한 보호방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마련이 부재한 상황에서 입소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였다.⁵⁹⁾ 이는 아동의 인종, 출생,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UN 아동권리협약 제2조상의 차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55)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4는 외국인 아동인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는 특칙을 두고 있으나, 처음부터 체류자격이 없었던 경우는 위 조문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56) 중국 국적의 학대피해아동이 발견되었으나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보호시설 입소가 거부된 사안으로 연합뉴스 2019. 4. 6. 자 기사 참조. 위 기사는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5080400371?section=search>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종방문일자 2022. 6. 19.).

57)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문헌으로 김사강(2017), 528-529면.

58)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2019. 3. 29.자 결정: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참조.

59) 국가인권위원회 2019. 3. 29.자 보도자료, 『“학대피해 아동보호, 이주아동이라고 제외될 수 없어” - 인권위, 보건복지부의 제도개선 권고 불수용에 우려표명-』 참조. 위 보도자료는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30&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3945>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종방문일자 2022. 6. 19.).

다. 기타

그 밖에 출생신고가 제 때 되지 못한 아동들이 건강보험이나 의무교육 등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널리 알려져 있다. 물론 국민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까지 교육·의료서비스·사회복지 기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외국인에게 모든 기본권이 무한정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것”이라고 하여 이른바 권리성질설을 택하고 있다.⁶⁰⁾ 하지만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출생증명서가 없는 아동들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등록될 때까지 보건·교육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기본권의 향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⁶¹⁾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민 아닌 아동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령 외국인 아동은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거주지 내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으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제75조 제2항 제2호), 그 과정에서 외국인 학생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교직원 등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통보의무가 면제된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호). 불법체류 아동이라도 강제퇴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⁶²⁾ 또한 만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서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한다. 건강보험 제도 자체는 사회보장보험체계의 일부이므로 이를 통한 의료보장서비스의 제공은 국민에게만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나, 2019. 7. 16.부터는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를 적용하여 부모 중 일방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외국인 아동이라도 국민과 동일한 내용의 건강보험 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그렇지만 위와 같은 조치에 따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아동은 주민등록번호의 부재로 인해 교육행정시스템(NEIS) 등록, 급식비 지원, 스쿨뱅킹 계좌 개설, 여행자보험의 가입이 필요한 각종의 현장학습활동 등으로부터 배제되며, 고등학교 이상의 상급학교 진학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아동에게 건강보험에 따른 각종의 급여가 제공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결과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국민인 아동에 비해 외국인 아동에게 훨씬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국민인 아동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해주거나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국민이 아닌 아동에게는 신분증명의 방법이 영구히 봉쇄되기 때문이다.⁶³⁾

2. 국제규범 준수의 관점

가. 출생등록권의 근거규범

UN 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모든 아동에게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⁶⁴⁾ 출생신고는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기본적인 보건·교육 및 사회복지시스템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⁶⁵⁾ 출생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아동방임(neglect)에 해당한다.⁶⁶⁾ 이 때 당사국이 출생등록을 보장해야 하는 인적 범위는 당사국의 국

60) 헌재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또한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8헌마430 결정은 ‘인간의 권리’라면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것이며, 그 외국인이 불법체류 중인지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외국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인정되는 범위에 관해서는 전상현, “외국인의 기본권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43권(2014), 579-607면 참조.

61) 김승권/김인숙/박동은/이배근/이용교/이재연/이호균/황옥경, 『아동권리협약 이행 핸드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9(이하 ‘핸드북’ 형태로 인용한다), 676, 796-798면.

62) 이러한 정책이 정착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자세히는 김사강(2017), 498-513면 참조.

63) 외국인이나 무국적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가족관계등록실무(2), 496면 참조.

64) 위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받아야 한다.”

65) CRC/C/GC/7, para.25.

66) CRC/C/GC/13, para.20. 인천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고단6538 판결 역시 “출생신고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교육, 보건의료,

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인 아동에 한정되지 않으며, 당사국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을 의미한다.⁶⁷⁾ UN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역시 2012년 결의안에서 본인 또는 그의 부모나 가족 구성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무상의 출생등록 제도를 보장할 것을 각 가입국에 요청하면서 효과적인 출생등록과 출생증명서의 제공을 강조한 바 있다.⁶⁸⁾ 그 밖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4조제2항,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하 ‘UN 장애인권리협약’이라고 한다.) 제18조제2항 및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제29조 역시 아동의 출생등록권을 명시하고 있다.

나. 각종 UN 위원회의 권고

우리나라는 이 중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제외한 모든 협약에 가입⁶⁹⁾ 하였으므로, 당사국의 지위에서 아동의 출생등록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인에게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까닭에 UN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출생등록에 관한 법제를 개선하

라는 권고를 받아 왔다. 이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UN 아동권리위원회의 2011년 권고이다. 위 권고는 우리나라에서 출생자동등록제 내지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근거로 널리 활용⁷⁰⁾되고 있으나, 사실 UN 아동권리위원회가 당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권고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인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의 도입이 아니라, 난민·불법체류자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아동을 위한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이었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현행 법제와 실무가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에 의한 보편적 출생등록을 제공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 위원회는 난민, 망명신청자 또는 불법체류 등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출생등록을 현실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협약 제7조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부모의 법적 지위 및/또는 출신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⁷¹⁾

이러한 이유로 UN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동 위원회에 제출된 대한민국의 5·6차 국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대한민국에 온라인 출생등록제 및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온라인 등록을 포함한 출생등록이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생지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강조점 필자 추가)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⁷²⁾

사회보장 등 공적서비스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이며 아동의 정체성과 존재를 인정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관심과 보호의 대상으로 편입하는 사회적 의미의 인간으로 겪는 첫 관문으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동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판시하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아동이 기본적인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을 아동방임으로 보고 처벌한 바 있다. 위 판결의 전문은 https://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7670&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re_kname=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종방문일자 2022. 6. 19.).

67) 핸드북, 202면 참조.

68) A/HRC/20/L.8, art.8.

69) 세계인권선언은 1948. 12. 10.부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1990. 7. 10.부터, UN 아동권리협약은 1991. 12. 20.부터, UN 장애인권리협약은 2008. 5. 3.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효되었다.

70) 가령 서중희(2016), 59면; 소라미(2016), 483-484면; 송효진, “출생신고제도의 개선방안 의료기관 연계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家族法研究 第31卷 2號(2017), 175-176면.

71) CRC/C/KOR/CO/3-4, paras.36-37. 당시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난민·불법체류자 등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외에 우리나라의 출생신고 제도와 관련하여 양부모 등에 의한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통해 적절한 사법적 심사 없이 사실상 입양을 성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였으나, 이 쟁점은 2012년 「입양특례법」 및 2013년 「민법」 개정에 의해 입양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이미 해결되었다.

72) CRC/C/KOR/CO/5-6, para.22: “위원회는 온라인 출생등록제 및 통보제의 도입을 환영한다. 모든 사람을 위해 출생등록을 포함한 법적 정체성을 제공한다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목적 16.9.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촉구한다.: (a) 온라인 등록을 포함한 출생등록이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생지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b) 모든 아동이 출생 당시에 등록될 수 있도록 비혼부가 그들의 자녀를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 (c) 등록되지 않은 출생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감독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d) 출생등록의 중요성

우리나라에 국민 아닌 아동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이 UN 아동권리위원회만은 아니다. UN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2015년 권고사항⁷³⁾,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의 2017년 권고사항⁷⁴⁾,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의 2018년 권고사항⁷⁵⁾ 역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⁷⁶⁾ 특히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의 2018년 권고사항은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⁷⁷⁾

“위원회는 외국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출생등록을 본국 대사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 출신의 부모로부터 출생한 아동의 출생등록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한국 국적의 부와 외국 국적의 모 간에 출생한 혼인 외 출생자의 국적 취득절차를 위해 자녀가 모의 본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여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그 결과 외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안들에서는 아동들이 등록되지 않은 상

태가 되고, 일련의 사회복지급여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일 반권고 제30호에 따라, 위원회는 출생등록이야말로 광범위한 인권 향유를 위한 필수요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당사국에 자국 영토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들이, 그들의 국적 및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등록되도록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에 한국 국적의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 출생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존재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할 것을 권고한다.(…)”

3. 비교법적 관점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자국의 신분등록 제도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⁷⁸⁾·캐나다⁷⁹⁾ 등과 같이 국적에 관해 출생지주의 내지 속지주의, 즉 자국 내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자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정책을 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부모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해 출생등록이 가능함은 물론이고, 국적에 관해 혈통주의 내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라도 신분등록 내지 출생등록에

에 관해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실시할 것.

73) CCPR/C/KOR/CO/4, paras.56-57: “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이 자녀의 출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국 대사관에 가야 하는데, 이는 종종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격 보유자 및 난민에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며 우려를 표한다. 당사국은 부모의 법적 지위 및 출신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74) E/C.12/KOR/CO/4, paras.26-27: “위원회는 당사국의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들이 오로지 국민에게만 적용된다는 점 및 국민이 아닌 자는 사회적 기본권 전부를 보장받을 자격이 없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특히 위원회는 국민 아닌 자들이 당사국의 사회보장제도 및 출생등록과 학대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각종의 공적 서비스로부터 배제된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래의 국적을 이유로 하는 차별 없이 협약상의 권리들이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당사국에게 국민 아닌 자들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로부터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며, 부모의 지위와 무관하게 자녀들에게 보편적 출생등록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75) CEDAW/C/KOR/CO/8, paras.34-35: “위원회는 (a) 대한민국에 보편적이며 의무적인 출생등록제도가 없는 결과 미등록 이주여성, 특히 미혼인 미등록 이주여성의 자녀가 무국적자가 될 위험에 놓이는 점, 이는 미혼모에 대한 성차별적 사회적 낙인을 지속시킨다는 점, 나아가 국가가 사회적 합의 부재를 이유로 외국인 부모로부터 출생한 자녀를 등록하는 법안을 채택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a) 병원 및 보건 전문가에 의한 의무적 출생등록 제도를 포함하여 외국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동들의 등록을 위해 필요한 법과 절차를 도입하고 시행할 것(…)을 당사국에게 권고한다.”

76) 위 각 위원회 권고 사항을 소개하고 있는 문헌으로 김진(2018), 31-33면 참조.

77) CERD/C/KOR/CO/17-19, paras.27-28.

78)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해당 법권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해 출생 후 5일 내에 의사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생증명서를 신분등록관서에서 직접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미국에서의 출생등록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문헌으로 김진(2018), 36면; 서종희(2016), 47면; 이해정(2019), 98-101면 참조.

79) 가령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경우에 아동이 출생한 병원 등 의료기관은 출생시로부터 48시간 내에 신분등록관서에 출생 통보를 하여야 하며, 부모 등 출생신고의무자는 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신분등록관서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출생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분등록관서의 장이 출생등록을 할 수 있다. 이른바 ‘출생통보제’에 따라 모든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을 담보하는 것이다. 캐나다에서의 출생등록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문헌으로 이해정(2019), 113-121면; 최성경, “캐나다의 출생 관련 법제와 그 운영에 관한 소고”, 비교사법 제26권1호(2019), 225-237면 참조.

있어서만큼은 속지주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독일은 부모 중 일방이 독일 국민인 경우에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혈통주의를 택하고 있지만,⁸⁰⁾ 독일의 「신분등록법(Personenstandsgesetz)」은 국적을 불문하고 적용된다. 따라서 모든 부모는 자녀 출생 후 7일 내에 신분등록관서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모 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출생이 이루어진 의료기관의 장이나 시설장 기타 출생 현장에 있었던 자에게도 모두 출생 후 7일 내에 출생신고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⁸¹⁾ 이러한 독일 내에서의 출생신고의무는 매우 강력한 것이어서 외국인 부모가 본국 대사관 등에 본국법에 따른 출생신고를 한 경우라도 독일법에 따른 출생신고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⁸²⁾

호주 역시 부모 중 한쪽이 자국민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에 한해 호주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⁸³⁾으로 하면서도 출생 즉시 호주 국적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른바 ‘출생통보제’를 통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한다. 즉,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은 일정기간 내에 신분등록관서에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부모 등 출생신고의무자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출생신고가 없어 등록에 필요한 사항 중 일부의 기록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신분등록관서는 가능한 부분만으로 출생등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일본 역시 국적에 관해서는 속인주의를 택하면서도 신분등록에 관해서는 일찍부터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가령 외국 국적의 부모라도 일본 영토 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호적법(戶籍法)」 제49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일본의 호적관서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혼인신고·이혼

신고·사망신고 기타 모든 유형의 가족관계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호적법에 따른 신고가 허용된다.⁸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출생신고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호적을 작성하지 않을 뿐이다. 호적이 작성되지 않을 뿐, 출생신고 자체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출생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호적관서로부터 출생신고 기재사항증명서(出生届記載事項証明書)를 발급받을 수 있다.⁸⁵⁾ 다만, 일본에서도 여러 사정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이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UN 아동권리위원회는 2010년과 2019년 모두 일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출생등록을 보장하고, 무국적 상태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적 관련 법률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⁸⁶⁾

4. 소결

국제인권규범이 신분등록과 국적 간의 관계에 대해 요구하는 바는 분명하다. 국민 아닌 자·망명신청자·난민·무국적자를 포함한 모든 아동은 ‘자신이 출생한 국가’에서 출생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한다.⁸⁷⁾ 특히 UN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의 원칙은 인종·성별·언어·종교·정치적 의견·국적·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장애 그 밖에 어떠한 지위를 불문하고 모든 아동에게 자국의 아동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신분등록체계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⁸⁸⁾ 신분등록제도는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각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용자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

80) 독일 「국적법」 제4조제1항. 단, 독일은 2000년 「국적법」 개정 이래 독일 내에서 출생하여 8년 이상 독일에서 거주한 자에게 독일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81) 독일 신분등록법 제18조 및 제20조. 그 밖에 독일의 출생등록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문헌으로 김진(2018), 36-37면; 서종희(2016), 49-50면; 이해정(2019), 125-127면; 한명진, “독일의 출생신고 법제에 관한 소고”, 法學論叢 第39卷 第1號(2019), 283-296면 참조.

82) 한명진(2019), 284면.

83) 단, 호주는 호주에서 출생한 아동이 10살이 될 당시에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호주 국적을 인정하는 부분적 출생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84) 藤正敬, 戶籍と國籍の近現代史-民族・血統・日本人, 株式會社 明石書店, 2013, 38頁. 위 문헌에 따르면 1899년 8월에 이미 외국인에게도 일본 호적법에 따른 각종 신고를 허용한 사법성회답(司法省回答)이 발견된다고 한다. 그 밖에 일본의 출생등록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문헌으로 김진(2018), 34면; 서종희(2016), 52-53면 참조.

85) CRC/C/JPN/4-5, para.54 참조. ‘출생신고기재사항증명서’는 우리 가족관계등록법 제42조에 따른 ‘출생신고수리증명서’와는 달리 출생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효력이 있다.

86) CRC/C/JPN/CO/3, para.45; CRC/C/JPN/CO/4-5, para.23 참조.

87) A/HRC/27/22, para.11.

88) A/HRC/27/22, para.11.

는 현행법의 태도는 이례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II.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우리 가족관계등록부가 전통적으로 국적부로서의 기능을 함께 수행해 온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나, 국적부로서의 기능은 외국인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을 배제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인의 국적이 무엇인지를 기록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⁸⁹⁾ 즉,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해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추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⁹⁰⁾, 향후 외국인에게도 가족관계등록 제도의 이용을 허용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는 그의 ‘국적’이 무엇인지를 추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어차피 어떤 사람의 국적이 무엇인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존재나 그 내용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적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5. 토론: 국적부의 필요성?

보다 근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왜 국적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입법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舊 「호적법」 제정 당시 입법자의 의사, 특히 국적상실의 경우에 호적으로부터 제적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舊 「호적법」 자체의 문리해석에 따르면 외국인 아동에 대해 일단 호적에 그 출생사실을 기재한 후 ‘국적상실’을 이유로 제적하는 방식의 운용도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애초에 호적 기재를 봉쇄하는 관행이 형성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상정해볼 수 있는 첫 번째 가설은 우리 호적법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일본 「호적법」의 관행을 가족관계등록법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는 것이다. III. 3.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외국인에게 「호적법」에 따른 각종의 신

분행위의 신고를 허용하면서도 외국인을 위한 호적부를 작성하는 것은 현재까지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외국인을 위한 각종 신고 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정작 호적부에의 기재를 허용하지 않았던 우리 舊 「호적법」의 태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일본의 호적법 역시 우리 호적법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경우에 호적을 편제해서는 안 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에게는 씨(氏)가 없으므로 호적필두자와 씨가 동일한 배우자와 자녀들로 호적을 편제하도록 한 일본 「호적법」 제6조의 해석상 외국인을 호적에 기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⁹¹⁾

일본이 이와 같이 외국인에게 호적 제도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20세기 초 식민지배를 확장하던 시절 일본의 영토를 내지(内地)와 외지(外地)로 나누어 지역에 따라 신분 등록에 관한 적용법규를 달리 정하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시절 한일합병 조약에 따라 조선인에게 일본 국적을 부여하면서도 호적에 관해서는 일본의 호적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결국 일본 호적을 갖지 못한 외지인(外地人), 즉 조선인을 차별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었다.⁹²⁾ 가령 일본은 1919년 조선의 독립운동 직후 치안대책을 이유로 조선호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내지(内地) 여행을 위해 별도의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며⁹³⁾,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후에는 한일합병 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을 취득한 후 계속 일본에 거주 중이었던 조선인으로부터 일본 호적이 없음을 들어 일본 국적을 일괄적으로 박탈하였다.⁹⁴⁾ 이와 같이 외지인(外地人)의 차별을 위해 섰국적으로 운영되었던 일본 호적 제도의 역사와 관행을 우리나라가 따를 바는 아니다.

두 번째 가설은 우리나라 특유의 분단 현실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법 입법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

89) 소라미(2016), 491-492면; 이탁건(2016), 53면 역시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면 국민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국민 아닌 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 줄 수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위 견해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추정력은 사실상 추정에 불과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추정을 반복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는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태도와 차이가 있다.

90) 가족관계등록실무[I], 법원행정처, 2018, 4, 485면.

91) 遠藤正敬(2013), 18頁. 1898년 일본 「호적법」에는 외국인의 호적 이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였으나, 1914년 개정에 의해 삭제되었는데, 이는 당연한 규정이었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었을 뿐, 외국인의 호적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 삭제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遠藤正敬(2013), 142-145頁.

92) 자세한 내용은 遠藤正敬(2013), 161-198頁.

93) 遠藤正敬(2013), 178頁.

94) 遠藤正敬(2013), 19頁.

에 비추어 볼 때 남북대치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신원확인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관계가 일목요연하게 표시되는 호적부를 국적부의 대용으로 사용하여 국민의 동태를 보다 손쉽게 파악하는 데 활용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⁹⁵⁾ 하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국적부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II.2.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입법부에 의해 좌절된 바 있다.

IV.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방안

1.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표준모델

III.2.에서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각종의 국제인권규범은 각 당사국에 국민과 국민 아닌 자가 두루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각종의 국제인권규범이 상정하고 있는 ‘출생등록(birth registration)’이란 해당 국가의 법률요건에 따라 출생의 사실과 그 주요 요소를 신분등록부(civil registry)에 계속적·영구적·보편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⁹⁶⁾ ‘출생등록’에는 ① 신분등록관에게 출생사실을 신고하고, ② 그 사실을 확인한 신분등록관이 출생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며, ③ 국가가 출생증명서⁹⁷⁾를 발급해주는 모든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④ 본인의 이름·출생일자 및 장소,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는 부모 쌍방의 성명·연령 또는 출생일·상거소지 및 국적이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⁹⁸⁾

가족관계등록 제도의 이용자를 국민 아닌 자들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난민신청자 등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이용하여 자녀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굳이 가족관계등록제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용자를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⁹⁹⁾ 하지만 외국인등록제도는 주민등록 유사의 행정 목적으로 외국인의 체류자격 등을 증명할 뿐이며, 신분증명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¹⁰⁰⁾,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¹⁰¹⁾에서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고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제와는 거리가 있다.

현재 대법원은 외국인 아동을 위한 출생신고나 신분증명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작성에 관한 신고 이외의 가족관계등록신고’로 처리하여 신고서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보존하는 한편, 부모 등에게 ‘출생신고수리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¹⁰²⁾ 하지만 이러한 수리증명서는 출생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며, 출생 사실 자체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거나 해당 아동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형의 서면이 아니므로, 이것만으로는 아직 우리나라가 출생등록에 관한 국제규범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¹⁰³⁾ 합법적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내에서 출생한 모든 국민

95) 2003. 6. 4.자 제1차 회의 회의록, 34면 중 조정환 위원 발언: “그 사람의 생활에 불편하지 않게 증명제 형태로 해서 그러한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모르지만 국가에서 관리 감독할 때는 그 사람의 할아버지가 누구이고 아버지가 누구이고 그 사람이 누구랑 어떠한 관계 하에 있고 그와 같은 형태의 신분공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는 한, 지금 조선족 문제라든가 남북대치 상황이라든가 모든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디서 나온 사람인지에 관한 것이 확연히 쉽게 알 수 없는 상태의 시스템으로 나간다면 다시 또 국적부라고 해서 뭔가 새로 만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마당에서는 신분공시에 관한 기능은 정확하게 유지되고 기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분 참조.

96) A/HRC/27/22, para.4.

97) 이 때 ‘출생증명서’란 국가가 출생등록 사실의 인증을 위해 개인에게 발급해주는 서류로서 국가가 해당 아동의 존재를 법적으로 승인하였다는 가장 직접적인 물적 증거를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기본증명서가 출생증명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98) A/HRC/27/22, para.5.

99)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제5·6차 국가보고서에서 난민이나 인도적 체류자 등은 외국인등록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등록제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서술한 바 있다. CRC/C/KOR/5-6, para.59 참조.

100) 이진혜(2018), 7면.

101)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제5호에 따라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함께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102) 가족관계등록법 제42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 참조.

103) 같은 취지로 권영실(2020), 248면; 김상원/김희진(2019), 66면; 소라미(2016), 490-491면; 송진성(2018), 234-236면; 이탁건(2016), 50-51면 등 참조. 특히 송진성(2018), 235-236면; 이탁건(2016), 50면 각주 4)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통보의무를 지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러 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함께

아닌 자에게 우리 국민이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시스템에 따른 신분등록과 증명의 기회를 계속적·영구적·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신분등록제도를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2. 관련 개정안의 검토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는 높아진 아동인권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출생통보제 내지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한 개정법안이 다수 제출된 바 있다.¹⁰⁴⁾ 하지만 이 중 국민 아닌 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 법안은 단 2건에 불과하다. 하나는 2018. 8. 28. 제출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5093, 이하 ‘윤후덕 의원안’이라고 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2018. 9. 27. 제출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5749, 이하 ‘원혜영 의원안’이라고 한다.)이다.¹⁰⁵⁾ 위 각 법안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윤후덕 의원안이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 아닌 아동 모두에게 가족관계등록제도 전반의 이용을 허용하고자 한 반면, 원혜영 의원안은

법 시행 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국민 아닌 아동에 한해 외국인아동출생등록부만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생·혼인·사망 등 신분사항별로 한정하여 별개의 신분등록부를 작성하는 이른바 ‘사건별 편제방식’을 택하고 있는 서구의 예와 달리 우리나라는 가족관계등록부라는 하나의 신분등록부에 출생부터 사망시까지 발생하는 한 개인의 모든 신분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법상황 하에서 윤후덕 의원안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모두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이용을 널리 허용하는 것은 분명 기존 시스템에 상당한 중압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혜영 의원안과 같이 국민 아닌 자에게 출생에 관해서만 그 출생등록부의 작성을 허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찬성할 수 없다.

첫째, 출생등록은 “출생·사망·입양·혼인 및 이혼 등 민사적 지위의 변동을 가져오는 주요 사건들의 발생과 주요요소들을 무상으로, 그리고 보편적·강제적으로 기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적 신분등록 체계의 일부”여야 한다는 것이 UN의 입장이다.¹⁰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혜영 의원안이 제안하고 있는 외국인아동출생등록부는 오로지 출생의 사실과 그 주요요소만을 담고 있으며, 아동이 성년에 달한 경우에 당해 출생등록부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당해 아동이 사망

지적하고 있다.

104) 출생통보제 도입을 목적으로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으로 2017. 6. 27.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7630); 2017. 8. 8.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8435); 2018. 8. 28.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5093); 2018. 9. 27.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5749); 2019. 1. 24.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8307); 2019. 2. 26.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8828); 2019. 7. 12.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1468) 등 참조. 이는 모두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으로 2020. 7. 16.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048); 2021. 1. 21.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554); 2021. 1. 28.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712); 2021. 2. 4.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931); 2021. 3. 2.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민철 의원, 의안번호 2108448); 2021. 3. 15.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표발의 양금희 의원, 의안번호 2108795); 2021. 3. 15.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798); 2021. 5. 11.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041); 2022. 1. 19.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483) 등이 있으며, 2022. 3. 4. 드디어 정부 역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114860)을 제21대 국회에 제출하였다.

105) 법무부는 2021년 11월경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111241412001> 참조, 최종방문일자: 2022. 6. 19.), 실제 입법예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06) A/HRC/27/22, para.7, 36.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 악용의 소지가 크다. 진실에 반하는 신분등록이나 이중 신분등록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N은 차별금지원칙에 따라 모든 아동을 위해 자국의 아동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신분등록체계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¹⁰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아동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닌 외국인아동출생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그룹핑을 통한 차별과 낙인의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 출생증명서의 형식 자체로부터 외국인 아동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만약 출생통보제가 전면 도입된다면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에 관한 사실이 일괄적으로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통보되고, 그 통보된 사실에 기초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들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관련 업무가 진행될 것이다. 이 때 의료기관으로서는 모든 아동의 국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국민인 아동과 국민 아닌 아동에 관한 출생사실을 모두 일괄통보할 수밖에 없고, 가족관계등록관서로서도 부모(특히 모)의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에 아동의 부모 쌍방이나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또는 모두 외국인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해당 아동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것인지 또는 외국인아동출생등록부를 작성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해당 아동에 대한 신속한 출생등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국인 아동을 위한 출생등록 역시 가족관계등록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은 호적필두자를 기준으로 그의 배우자와 자녀를 하나의 호적에 함께 기재하는 가족별 편제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일본 내에서 외국인 부모로부터 출생한 외국 국적의 자녀를 위해 호적을 편제하는 것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개인별 편제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한 번 외국인 아동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면 그가 성년이 된 후에도 계속 가족관계등록부를 이용해 자신의 신분관계를 공시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정책 결정시 특별히 고려할만한 요소는 아니다. 서구에서도 외국인은 출생뿐만 아니라, 혼인·사망 등 신분행위를 널리 신고 내지 등록할 수 있으며, 부기(附記) 내지 참조란을 통해 각 신분등록부의 내용을 연결하여 신분의 변동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V. 결론

지난 몇 년간 출생등록제 내지 출생통보제의 도입은 가족법학과 아동학계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다. 특히 2013년 이른바 ‘울산 계모 사건’¹⁰⁸⁾을 비롯한 각종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아동보호체계의 기초적 토대가 되는 아동의 출생등록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¹⁰⁹⁾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출생신고는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기본적인 보건·교육 및 사회복지시스템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 UN 아동권리협약 제7조를 비롯한 다수의 국제규약 역시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출생신고를 1차적으로 부모의 의무로 남겨두고 있고, 부모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다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책도 지극히 미비하다는 점¹¹⁰⁾, 이에 UN 아동권리위원회도 2011년 우리나라에 보편적 출생등록

107) A/HRC/27/22, para.11.

108) 연합뉴스 2013. 10. 29.자 기사 참조.

109) 대표적으로 연합뉴스 2016. 4. 1.자 기사(10남매 중 네 아이에 대해 출생 후 11~17년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양육한 사안) 참조. 위 기사는 <https://www.yna.co.kr/view/AKR20160401152300054?input=1195m>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종방문일자 2022. 6. 19.).

110) 특히 ① 부모 기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 ② 과태료 액수가 낮아 부모 기타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확실한 제재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 ③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발견된 경우라도 부모를 알 수 없거나 출생증명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적시에 출생등록이 되기 어렵다는 점, ④ 부모 기타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가령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에 생부가 모의 인적사항 중 일부라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생신고가 불가능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 직권에 의한 출생신고 제도의 이용이 소극적인 점 등이 주로 지적되고 있다.

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는 점, 따라서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거나, 적어도 국가가 모든 아동에 대해 제대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 등을 논지로 하는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으며,¹¹¹⁾ 2022. 3. 4.에는 드디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¹¹²⁾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우리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한계가 있다.¹¹³⁾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아동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UN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universal birth registration)의 이념은 부모나 아동의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따라 출생등록의 가능성이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난민·불법체류자 등과 같이 국민이 아닌 아동에게도 신분등록과 증명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아동의 신분등록 및 증명에 관해서는 속지주의가 적용되어야 마땅하며, 그것이 보편적인 국제규범이자 외국의 모범적인 입법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인 아동의 경우에도 아직 완전한 출생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인 아동을 위해 출생등록 제도를 완비하는 것만으로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할 수 없다.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출생등록제 내지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

고 주장하려면 외국인 아동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도 함께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부 견해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의 해석으로도 국민 아닌 자가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¹¹⁴⁾ 가족관계등록법 제1조가 그 적용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명백히 문언에 반한다는 점, 목적 조항에서 법률의 규율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면서도 적용대상을 외국인으로 넓히고 있는 법률들은 통상 외국인을 위한 특례조항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반면,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제9조제2항 외에 관련 조문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으로서 공적(전자)문서의 통일적 처리를 위한 기술적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확대해석 내지 유추해석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업무처리를 위한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석론에 의존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111) 김상원/김희진(2019), 57-88면; 김진(2018), 30-36면; 서종희(2016), 39-65면; 소라미(2016), 481-496면; 송진성(2018), 217-246면; 송효진(2017), 169-198면; 이진혜(2018), 7-10면; 최성경,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및 관련 법제를 위한 입법적 제언”, 한양법학 제30권 제2집(2019), 161-194면; 현소혜(2018), 50-54면 등 참조.

11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I2N2COK3K0U4T1R5P3T1I4K9N2C4H8 참조(최종방문일자: 2022. 6. 19.).

113) 각주 111)의 문헌 중 외국인 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김진(2018), 30-38면; 소라미(2016), 482, 490-492면; 송진성(2018), 232-238면; 송효진(2017), 176면 각주 16); 이진혜(2018), 11면 정도뿐이다. 그 밖에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문헌으로 권영실(2020), 245-250면; 김사강(2017), 522-526면 참조.

114) 이택진(2016), 53면. 위 논문은 목적조항에서 법률의 규율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더라도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외국인을 포함하는 사례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으며, 현행 제도 내에서 이미 특종신고라는 절차를 통해 일부 외국인의 출생신고를 포섭하고 있는 이상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율대상을 외국인으로 확장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8. 3. 20. 자 2017즈기10 결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1조를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기록의 대상이 되고, 모든 외국인가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9조 제2항 제4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출생한 외국인 자녀들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에 출생한 외국인 자녀를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령의 해석 적용 권한은 법원에 전속된 것이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므로, 결국 위 주장에 근거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이 혼 7

● 악의의 유기는 이혼사유가 된다

㉠ 문 21 | 남편은 지방으로 다니며 건축 일을 합니다. 한번 공사가 시작되면 몇 달씩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6개월 전에 떠난 뒤 휴대전화도 끊고 집에도 오지 않으며 생활비도 보내지 않습니다. 가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남편과 살 수 없어 이혼을 하려는데 가능하지요?

㉡ 부부는 동거하고 협조하며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써,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남편이 고의로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는다면 동거, 협조,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이는 악의의 유기로써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동법 제840조 제2호).

● 정당한 이유 없이 별거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된다

㉢ 문 22 |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 집을 나갔습니다.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최근 남편이 지방에 가서 새 직장을 구해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 번 찾아가서 같이 살든지 생활비를 주든지 하라고 요구해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은 이혼도 해 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혼할 수 없는지요?

㉣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와 자녀를 돌보지 않고 별거하며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 가출이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 문 23 | 남편은 걸핏하면 저를 구타했습니다. 남편에게 구타당한 후유증으로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손가락도 온전치 못하는데 얼마 전에는 자녀들과 손자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을 하고 폭행하여 딸집으로 피신해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을 나갔다고 하면서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막내가 아직 혼인 전이라 이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것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가출한 경우라면 귀하가 남편을 악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집을 나가게 만든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피치 못해 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내의 가출을 이유로 한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므408 판결;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므55 판결). 배우자의 폭력이나 학대, 유기 혹은 이혼 강요 등으로 인해 피치 못해 가출



한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귀하가 이혼을 원한다면 남편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Q 아버지께서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해 1973년에 허위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실제 부모님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아들인 저 한 명뿐입니다. 최근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자녀 때문에 상속재산의 분할과 처분이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 자녀를 등록부에서 말소하고 싶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록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 출생지 그리고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했다는 기록 외에는 다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되지 않을 때 잘못된 기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를 정정하는 방법으로는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방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과 확정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는 방법(동법 제107조)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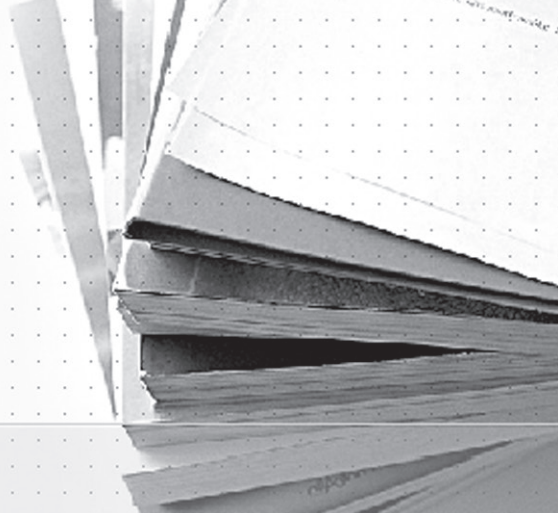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그 절차의 간이성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 15, 16 결정, 대법원 1995. 4. 13.자 95스5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실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출생신고로 인해 그 등록부를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으며,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허무인이 소를 제기할 수 없기에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등록부의 정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심판청구로 다룰 수 있습니다(부산가법 2017. 5. 12. 선고 2016드단211947 판결 참조). 다만 등록부가 실존인물이 아닌 허무인에 대한 것이라는 입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은경 상담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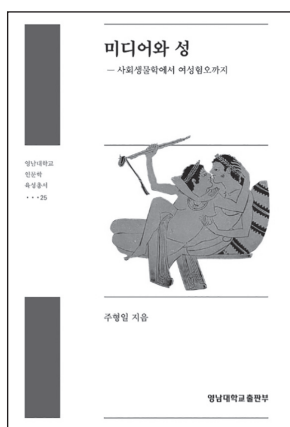
미디어와 성

사회생물학에서 여성혐오까지

영남대학교 인문학 육성총서 25

주형일 지음

영남대학교출판부, 2020



청소노동자의 아주 작은 권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두고 젊은이들이 이럴 줄 몰랐다고 하면 나는 곤대인 걸까. 시위의 기본은 불편을 볼모로 하는 게 맞고 그것이 정당한 권리라면 거창하게 '연대'까지는 아니어도 그 불편을 기꺼이 아니면 조금 불편해하면서도 감수하는 것이 시민된 자의 도리가 아닐까. 저 멀리 외국에까지 가서 그들은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소녀상을 모독하는 행위에는 입 다무는 것으로 동조하는 이들이 청소노동자를 고소하는 이들과 같은 부류라 생각한다. 이런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이긴 한가.

지금의 시대를 이렇게 생각하곤 한다. '관음과 노출의 혼종, 대 혐오의 시대' 라고.

역사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노인과 청년이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 서로를 이렇게 혐오했던 적이 있든가 싶다. 동물에 대해 후원한다고 하면 인간이나 돌보라고 하고, 난민에 대해 말하면 내국인이나 잘 돌보라고 한다. 길거리 동물과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당연히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데 그것도 또 피부색에 따라 구분을 한다. 이러한 구분과 차별이 당연한 흐름으로 자리하고 있는 우리 사회 저변의 가장 강력한 흐름은 '미소지니'일 것이다. 무엇보다 미디어가 문제인 세상이다. 넘쳐나는 정보, 누구나 메신저가 되는 세상이라면 그나마 이름 붙은 언론이라는 매체의 문제가 어떻게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일 정도다. 사회의 모든 갈등을 편의와 이익에 따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언론의 기능이자 목적으로 보이는 시대다.

이 책 『미디어와 성』은 이 같은 세상에서 미디어가 성을 재현하면서 성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사회적 담론을 만드는 방식을 분석한다. 그리하여 한국 사회의 성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데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포르노그래피의 사회적, 문화적 역할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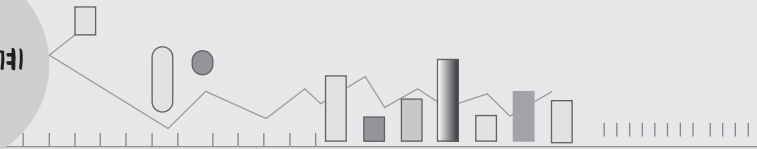
함으로써 미디어를 통한 성의 재현이 갖는 정치적, 문화적 의미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즉 성이 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며, 미디어 콘텐츠가 어떻게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을 만들고 고착시키는지를 고찰하며 미디어를 통해 성을 재현하는 문제가 결국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낭만적 사랑 개념을 젠더 문제와 연결해 분석하고 이성애와 동성애, 퀴어 등의 섹슈얼리티 문제와 미디어에 의한 젠더 재현 방식의 변화 과정을 추적해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통해 과열되고 있는 젠더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안하는데 이같이 흥미 있는 주제를 포르노그래피, 디즈니 애니메이션, 한국 영화 등의 다양한 변수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설득력을 획득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 인터넷 공간의 젠더 담론에 관한 저자의 다음과 같은 견해에 동의한다. "인간애라는 보편적 동료애 없이 전개되는 모든 해방의 논리는 사실상 억압과 학살을 정당화하는 편리한 핑거거리를 만들 뿐이다. 인간에 대한 공감애 없이 작동하는 도구적 이성능은 항상 최악의 결과를 만든다." 그리고 "흔히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지만 보편적 감성을 갖추지 못한 이성은 역설적으로 인간을 가장 비이성적으로 만든다. ...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연대는 불가능하다. 연대가 없다면 사회를 변화하고자 하는 운동도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절실한 시점에 흥미롭게 읽은 책이었다.

책의 저자 주형일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5대학교와 1대학교에서 공부했으며 현재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숙현 편집부장



2022년도 제1차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개최, 직원재교육 겸해

본소의 2022년도 제1차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24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직원재교육을 겸해 열린 이날 회의는 김상용 교수(본소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장,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미화 변호사(법무법인 남산),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공동대표), 현소혜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차선자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등의 위원들과 광배희 소장 및 본소 직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소혜 교수의 '외국인 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필요성과 도입방안'과 김상용 교수의 '독일의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개관'에 대한 주제발표와 배인구 변호사의 '상속법개정방향'에 대한 의견 제안 및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관련사진 2면)

본소,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실무수습 업무협약 체결

본소는 6월 21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실무수습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본소는 창설 이후 법률구조사업, 가족법 개정운동은 물론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실무수습 업무협약을 통하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향후 본소에서 실무수습 기회를 갖게 된다.

협약식은 성균관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되었으며, 본소 광배희 소장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원장

을 비롯하여, 본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과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성균관대 현소혜 교수와 한진오 행정실장 등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협약식에서 광배희 소장은 본소 임상실습의 역사와 의미를 되짚어보고 실무수습이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활용하며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김일환 원장은 본소와 실무수습 협약을 맺게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학생들이 본소에서의 실무수습을 통하여 공익적 측면의 관점을 체험하고 어떤 법조인이 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해가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시 및 서울일자리지원센터와 함께 신용회복을 위한 노숙인 시설이용자 및 실무종사자 교육 실시

본소에서는 6월 21일 본소 강당에서 서울시 및 서울일자리지원센터와 함께 「신용회복을 위한 노숙인 시설이용자 및 실무종사자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였다. 본소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매년 2차례 노숙인의 신용회복을 위한 교육을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에

는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개별 노숙인 시설 방문 상담으로 대체한 바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열린 이번 교육에는 26개 노숙인 시설의 시설이용자 및 실무종사자 80여 명과 교육을 함께 주관한 서울시 남구하 정책팀장, 일자리지원센터 최성진 국장, 김미영 팀장, 임정옥 과장, 명창현 사회복지사 등 90여 명이 참석하였다.

본 교육은 광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되었으며, 1부에서는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제도(본소 전규선 상담위원), 신용회복 지원제도(신용회복위원회 류충완 수석), 주거복지제도(LH한국토지주택공사 김순영 차장)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2부에서는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본소 조은경·전규선·천다라 상담위원), 신용회복(신용회복위원회 류충완 수석), 주거복지(LH한국토지주택공사 김순영 차장), 건강보험료 결손처리(국민건강보험공단 조은희 과장) 등에 관한 상담이 진행되었다. 이날 상담에서는 파산·면책, 개인회생 신청, 명의도용, 핸드폰 미납요금 등에 관한 법률상담과 노숙인 시설에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및 신용회복절차와 건강보험료 미납 등에 관한 질문들이 많았다. 참가자들은 각 분야 전문가의 교육과 상담이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하였고, 관련 심화교육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관련사진 2면)

이레상담교육원 교육생 본소에서 법률구조체험교육

지난 6월 22일 본소에서 (사)이레양성평등상담교육문화원 부설 이레상담교육원의 가정폭력시설 종사자 양성 교육에 참가한 교육생들의 법률구조체험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날 교육에서는 천다라 상담위원의 진행으로 본소의 법률구조사업 및 가족법개정운동과 관련한 영상 시청과 상담소



사진 전시실 관람 등이 있었다. 이어 최수진 상담위원이 본소의 법률구조 사업 및 기관 연계 절차, 이혼 소송 관련 판례의 동향에 대해 강의하였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간담회

6월 17일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정은정 운영총괄팀장, 하정민과장, 윤경희 상담관(영등포센터) 등이 본소를 방문하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조은경·전규선 상담위원과 함께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양 기관의 협조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본소 연구용역사업 착수보고회의

본소에서는 6월 30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구용역사업착수보고회의를 가졌다. 「자녀양육비 법제 운용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정위탁아동 보호를 위한 미성년후견제도 개선방안», 「가정폭력상담에서의 온라인비대면 상담실태에 관한 연구», 「만화로 보는 한국사회의 여성과 가족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장차현실의 만화일기」 등을 주제로 한 본 연구용역사업은 외부 연구자로 구성해 교수(동국대학교 법학과), 김정순 박사(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 위원, 전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연희 교수(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장차현실 작가 등과 내부연구자로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숙현 편집부장과 조은경·차연실·박상진·유혜경 상담위원 등이 참여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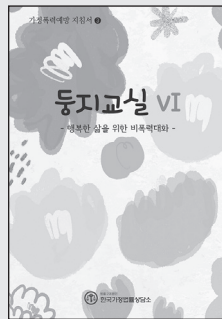
배희 소장 및 본소 연구진들과 조성혜 교수, 김정순 박사, 신연희 교수, 이서원 소장 등이 참석하였다.



본소, 가정폭력예방지침서III

「동지교실 VI - 행복한 삶을 위한 비폭력대화」 수정 보완하여 재발간

본소는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매월 1회 ‘동지교실’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동지교실’이라는 강좌 이름에는 가정폭력과 같은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해 해체 위기에 놓인 가정을 따뜻한 보금자리, 즉 ‘동지’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본 상담소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강좌 개설 초기에는 주로 가정폭력행위자를 중심으로 강좌를 운영하였으나, 점차 행위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강좌를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이번에는 2018년에 발간된 가정폭력예방지침서III 「동지교실VI - 행복한 삶을 위한 비폭력대화」의 내용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하여 새롭게 발간하였다. 본 책자는 비폭력 대화에 관심이 있는 내담자 및 행위자에게 교육자료로 배포하고, 업무협력기관 등 전국 유관기관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지난 6월23일 본소 교육프로그램으로 김병후 원장(정신

과전문의, 본소 이사)의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가 zoom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다. 이번 강의는 ‘관계에서의 상처’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병후 원장은 많은 사람이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데, 정신적 상처도 신체적 상처와 같이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상처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싸움의 악순환을 겪게 되므로 상처에 대한 것을 밝고 긍정적으로 인지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한다면 상처를 제거하면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참가자들은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진행되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강의는 매월 넷째 목요일에 이루어지며 다음 강의는 7월 28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방역을 철저히 하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으나, 방역지침의 변화에 따라 본소에서도 점진적으로 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다.

- 6.8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상담단상담원 가족법교육
- 복미영 상담위원
- 6.15. 순회상담-과천여성비전센터
- 조은경 상담위원
- 6.21. 노숙인신용회복법교육
- 조은경, 전규선 상담위원
- 6.22 법률구조체험-이레가정폭력상담원교육
- 최수진, 천다라 상담위원
- 6.28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상담단상담원 가족법교육
- 복미영 상담위원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6월 15일 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2년 과제중간보고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였다. 14일 서동일 감독과 장차현실 작가가 제작·연출한 영화 '니얼굴' 시사회와 17일 본소에서 진행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21일 본소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과의 업무협약식 및 30일 본소가 주관하는 연구용역사업 착수보고회의에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6월 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등 사건을 조정하였다. 24일에는 한국가족법학회·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에 온라인으로 참가하였다.

곽배희 소장, 김홍걸 국회의원과 만남 가져

곽배희 소장은 지난 6월 26일 본소를 방문한 김홍걸 국회의원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올해 9월 21일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회호 여사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김홍걸 의원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2022년 6월 상담통계

총 건수 5,135

법률상담 (4,438)

면접	전화	인터넷	순회	지상
883	3,449	101	4	1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576	42	79

• 인터넷 정보 이용 61,965 건

2022년 6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5,135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43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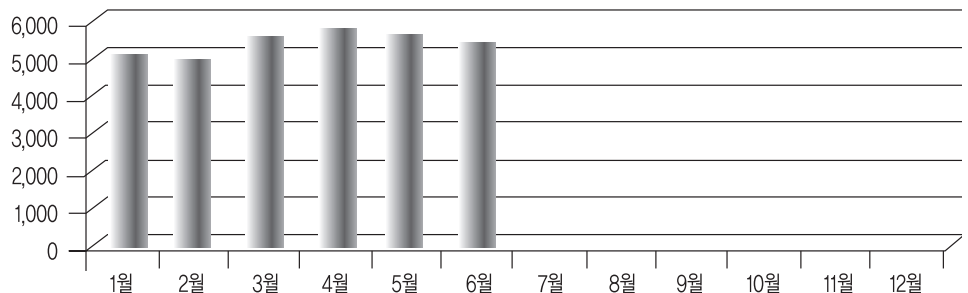
(86.4%), 화해조정 576건(11.2%), 소장 등 서류작성 42건(0.8%), 소송구조 79건(1.5%)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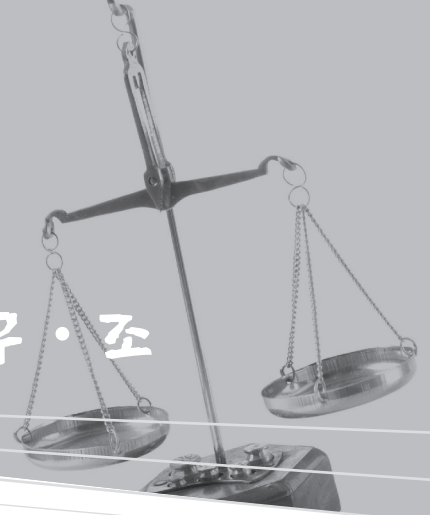
법률상담 4,438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2년 5월에 비해 가사사건은 남녀관계(0.2%→0.6%), 부부갈등(3.6%→3.7%), 사실혼해소(0.1%→1.1%), 면접교섭권(2.9%→3.2%), 친생부인(0.6%→1.0%), 친생자존부(2.5%→3.2%), 입양(0.8%→1.1%), 파혼(0.2%→0.3%), 부양(1.7%→2.0%), 가족관계등록부(3.2%→3.7%), 친양자(0.5%→0.6%),

개명(0.6%→0.8%), 성변경(0.7%→0.8%), 파양(0.1%→0.2%), 성년후견(2.7%→2.8%), 가사절차(5.9%→6.5%)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민사사건은 채권·채무(0.3%→0.5%), 파산(2.1%→3.2%), 개인회생(0.2%→0.3%), 형사사건은 성폭력(0.0%→0.1%)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438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883건(19.9%), 전화상담 3,449건(77.7%), 인터넷상담 101건(2.3%), 순회상담 4건(0.1%),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22년
월별
총건수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27년간 생활비, 양육비를 주지 않고 별거하던 남편과의 이혼조정

법률구조 2021-1-258

담당 : 홍성준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50대)는 피고(남, 60대)와 1985년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두 명의 성인 자녀를 두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직장이 있는 낯선 지역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피고의 잦은 외도, 가출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1995년경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을 주며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27년간 피고는 원고에게 일체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여 향후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울산가정법원 2022. 5. 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및 과거양육비로 20,000,000원을 2022. 7. 31.까지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 대한 분할연금청구를 모두 포기한다(각자 연금은 각자 수급하기로 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원고와 피고의 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각 명의자에게로 확정적으로 귀속하기로 한다.

5.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약속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한 부에 대한 양육비 지급 결정

법률구조 2021-1-430

담당 : 강길복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40대)과 상대방(남, 50대)은 2002년 5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여2, 10대)을 두었다. 그러나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고부갈등 등의 불화로 2009년 1월 협의 이혼을 하였으며, 당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청구인이 지정되었다. 2006년부터 상대방과 별거가 시작되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고, 청구인의 모의 건강 악화로 잠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도 하였다. 2012년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홀로 양육해왔는데 청구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직 후 수입이 중단되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월 119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개인회생이 진행 중으로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생활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혼 당시 상대방은 2009년 2월부터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하기

로 약속하였으나 2021년 3월까지 약 1,7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이 전부였다. 청구인이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응답하지 않았고 사건본인들의 연락에도 답이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와 함께 사건본인2의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 5. 26.)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87,980,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2022.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2의 양육비로 2021. 11. 20.부터 사건본인2가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월 6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자녀들의 양육에 무책임한 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1-1-443

담당 : 김경수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남, 30대)과 피신청인(여, 30대)은 2008년 12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10대)을 두었으나, 2009년 12월 재판상 이혼하였다.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는 피신청인이 매월 3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장애가 있는 상태로 현재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건본인이 중학생이 되면서 피신청인의 양육비 지급이 절실했으나 피신청인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인천가정법원 2022. 5. 26.)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창원지방법원 ◇◇지원 2009드단000 사건의 2009. 11. 11.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으로서 미지급 양육비의 일부인 800만 원을 2022. 6.부터 10개월간 매월 말일에 80만 원씩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고맙습니다

2022년 6월 자원봉사자

• 전화 상담을 도와주신

강경숙, 권영덕,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희, 유문숙, 이병주 님

• 야간상담을 해주신

김소이,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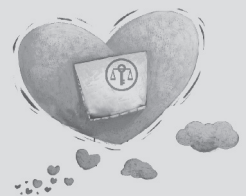
• 학생 자원봉사

김가령, 김나영, 김도연, 김상은, 김선옥, 김승원, 김승현, 김연주, 김지민, 김지유, 김지현, 김태은, 김하은, 김현정, 김현주, 김효진, 노현정, 문송지, 문연수, 민지용, 박도윤, 박선우, 박아영, 박태희, 배호진, 봉수빈, 송은하, 신수민, 오수민, 이서현, 이세진, 이수민, 이수정, 이수지, 이예원, 이진우, 임가현, 장보민, 장아현, 장지수, 정유나, 정은영, 정지현, 정희재, 조예원, 최세은, 최신양, 한기연, 허경호, 허정수 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님



2022년 8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7월 11일, 7월 25일, 8월은 휴강)
- ▶ 강사 : 김명준 소장(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12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사전예약 접수만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방법 : zoom을 통한 비대면 강의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7월 28일	소시오패스는 어떤 사람인가?
8월 25일	폭력적인 배우자에 대항하는 법
9월 22일	의심, 피해망상, 그리고 조현병
10월 27일	마음이란 무엇인가?
11월 24일	부부대화법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휴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등지고실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 상 : 서울가정법원 등 보호처분 대상자
- ▶ 진 행 :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정	강 의 제 목	강사
7월 13일	시간을 넘어서 고통을 지속시키는 트라우마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9월 7일	모든 정신적 어려움의 근원, 성격장애	
10월 12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드는 분노조절장애	
11월 9일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기분장애	
12월 7일	일상을 무너뜨리는 중독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에 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캠프 」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2년 8월 15일 ~ 8월 17일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일시 ▶
2022년 8월 15일
~ 8월 17일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SAMSUNG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가정법률 화상상담 개설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22년 7월 15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가정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화상상담을 시작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lawhome.or.kr